

구성원 소개

최문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(유한)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기업형사, 부동산, 건설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.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사건, S그룹의 펀드출자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, Y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, M그룹 회장의 업무상횡령 사건, P그룹 관세법위반 관련 사건, S그룹 회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등 다수의 기업형사사건에서 상당 부분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고, A시장 뇌물 사건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뇌물 등 사건에서 상당수 무죄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.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. 200여건 이상의 아파트 하자 소송사건을 수행한 바 있고,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관련 소송도 수행, 처리한 바 있습니다.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수차례 강의한 바 있고, 주택관리사시험 출제위원(2007년)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.



TEL.
02-3479-7840

MAIL.
mkchoi@barunlaw.com

학력

1998	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
2001	제43회 사법시험 합격
2004	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
2005	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과정

경력

2004	법무법인바른 소속 변호사
2005	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실무간사
2005~2007	누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
2008~2013	법무법인(유한)바른 소속 변호사
2014	문화체육위원회 제재 자문
2015	서울지방법변호사회 형사재판실무강사
2015	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정 수료
2019~현재	수협중앙회 감사실 자문
2019~현재	수협중앙회 청렴시민감사관 위촉
2014~현재	법무법인(유한)바른 구성원 변호사

주요 업무 및 활동

민사

최근업무사례

[조세]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사용료(로열티)와는 특성을 달리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냄

[금융]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한 대부업등록갱신 반려처분에 대해 C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1심 및 2심 전부 승소판결

[자문] 주식회사메디톡스를 대리해 주식회사하이웨이원의 지분 58.3% 인수 완료

[행정]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리하여 조정에 응함으로써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
[기업형사] 사유지의 통행을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여촌계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

[일반상사·민사소송]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'당사자의 의사표시'를 '당사자들의 합의'로 해석하여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는 변제공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주요업무분야

기업형사
재건축재개발
건설소송
금융소송

-
-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
 - 신라저축은행 신디케이트론 관련 소송
 - 포천A골프장인수 관련 체육시설법 쟁점 소송
 - 토마토저축은행 대출 관련 분쟁소송
 - 동양증권 사외이사 책임 관련 소송
 -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 관련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소송
 - 기타 일반 민사, 상사 사건

행정소송
건설·부동산
경영권 분쟁

부동산

-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적정성 관련 소송 다수
-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 다수
- 아파트 일조, 조망, 사생활 손해배상소송 다수
- 부동산등기 관련 소송
- 일제시대 사정명의자 관련 토지소송
- 재개발, 재건축 주택조합 관련 소송

형사

-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관련 업무상배임 사건
- 모그룹의 펀드출자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
- 모 조선그룹 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
- 시장,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다수
-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뇌물 사건 다수
- 대형할인마트 개인정보유출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